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8566    |
| 의 퇴 인 | 이종욱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6.5.13. |
| 추계번호  | 26B2299    |

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6조의4 신설<br>(입주자저축의<br>일부해지) |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.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일부해지한 납입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(제1항)   | 재량규정<br>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일부해지한 사람이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일부해지한 부분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(제2항)      | 의무규정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자의 산정방법, 일부해지 시 납입기간·금액의 인정 기준 및 일부해지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(제3항) | 의무규정     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6조의4 신설<br>(입주자저축의 일부해지) | ×   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일부해지한 사람이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납입하는 경우 종전 일부해지한 부분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가입자의 일부 해지건수가 증가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

예수금 지출 증가 및 원리금 상환 등에 따라 기금운용의 여유자금 변동 등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- 현재 입주자저축은 일부 해지가 허용되지 않아,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지급받도록 운영되고 있으며, 입주자저축 납입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일부해지가 허용될 경우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되어,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<sup>1)</sup>의 예수금(기타민간예수금) 지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, 향후 기금의 유동성 관리 및 연간 자금조달 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일부해지 허용의 한도, 인정 횟수, 대상 요건 및 이자의 산정방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어, 실제 제도 운영의 방식과 적용 범위가 불확정적이며, 일부해지를 이용할 가입자의 예상 규모와 해지 규모 및 재납입 비율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 일부해지에 따른 예수금 증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---

1) 제5조(기금의 재원 등)

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
2. 「주택법」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예승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nabo.go.kr |